홈페이지상의 기사제목 무단이용은 불법이지만, 저작권침해는 아니다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 판결-

홈페이지의 기사제목이 무단으로 복제(複製)되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도쿄본사가 digital contents 기획·제작회사인 「Digital Alliance」(본사 ·고베시)에 대해 2,480만 엔의 손해배상과 기사제목 복제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적재산(知的財産)고등법원 4부는 지난 10월 6일 "Digital사의 일련의 행위는 요미우리신문사의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판시, 요미우리신문사 측의 제소를 기각한 1심 도쿄지방법원 판결(2004년 3월)을 변경하여 Digital사에 약 24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인터넷상의 기사제목 무단이용을 불법행위로 판단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저작권침해는 부정되었으며, 금지청구도 기각되었다.

문제가 된 Digital사의 서비스는, 등록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광 게시판의 방식처럼 흐르는 최신뉴스기사 제목을 볼 수 있게 한 것.

제목은 인터넷서비스회사 「Yahoo」의 뉴스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며, 요미우리신문사가 Yahoo에 유상으로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제목을 클릭하면 Yahoo의 뉴스사이트가 표시되고 기사 전문을 읽을 수 있으며, Digital사는 제목 사이에 내보내는 광고로 수입을 얻도록 되어있다.

요미우리 측은 "홈페이지상의 기사제목 무단복제는 저작권 침해로서, 기사제목의 정보선도(鮮度)가 높으며, 상품가치가 가장 높은 단계에서 무단으로 복제·제공하는 행위는, 실태면에서 네트상에서의 뉴스배신(配信)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 요미우리의 사업과 경합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다. Digital사의 「무임승차」행위는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했으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사제목의 저작물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뉴스보도에서의 기사제목의 저작물성이 긍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표현 여하에 따라서는 창작성을 긍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기사제목의 표현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나, 문제가 된 각 제목은 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할 창작성을 갖고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법적보호를 받아야 할 이익이 침해된 경우이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미우리 홈페이지상의 기사제목에 대해 ① 많은 노력(勞力)과 비용을 들인 보도기관으로서의 일련의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② 상응한 노고(勞苦)와 연구에 의해 작성되어 간결한 표현으로 뉴스의 개요를 우선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③ 유료로 거래되어 독립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보호를 받아야 할 이익"이

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Digital사의 서비스는 "요미우리에 무단으로, 영리목적을 위해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정보선도(鮮度)가 높은 시기에 특별한 노력(勞力)도 없이, 실질적으로 dead copy(타기업의 동종의 제품을 모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것)하여 제목을 작성, 배신한 것으로, 요미우리의 업무와 경합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액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장통념이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황에서는 정확한 액수를 입증하기는 곤란하며, 1개월에 10,000엔(10만원 상당)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지청구에 대해서는 "Digital사의 장래에 대한 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물리쳤다.

(신문협회보 2005년 10월 11일자) □

현시점에서 60여 년 전의 사건 기사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중일(中日)전쟁 중이던 1937년 「百人斬り」(「군도로 백 명 베어죽이기」)를 했다고 보도된 구 일본군 장교 2명의 유족 3명이 허위의 기사로 경애추모(敬愛追慕)의 정을 침해받았다며 아시히 신문과 마이니찌 신문, 전(前)아사히신문 기자였던 本多勝一 씨 등을 상대로 3,6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8월 23일 "현시점에서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며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의하면, 도쿄일일(日日)신문(현 마이니찌 신문)은 1937년 장교 2명이 「군도(軍刀)로 백 명 베어죽이기 경쟁」을 했다는 기사를 게재했으며, 本多 씨도 아사히 신문이 72년에 단행본으로 발행한 「中國の旅」(중국여행)등의 서적에 「군도로 백 명 베어죽이기 경쟁」에 관해 기술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도쿄일일신문의 기사는 장교 2명이 기자에게 「군도로 백 명 베어죽이기 경쟁」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연재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허위, 과장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기자의 창작이라고는 인정하기가 곤란하며, 서적의 적시사실이 한눈에 명백하게 허위라고까지는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마이니찌 신문에 대한 제소는, 도쿄일일신문에의 게재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제척(除斥)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문협회보, 2005년 9월 13일자) □

기사의 중요부분에서 진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2003년에 발생한 후쿠오카(福岡)일가 4명 살해

사건을 둘러싼 「週刊新潮」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살해된 처의 실형(實兄) 부부가 신조사(新潮社) 등을 상대로 5,50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 민사6부는 지난 8월 29일 "기사의 중요부분이 진실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며,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시, 신조사 측에 합계 330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실형 부부는 이 사건과 관련, 「프라이데이」(동년 10월 10일호)의 기사에 대해서도 講談社를 상대로 3,3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 지방법원은 講談社 측에 880만 엔의 지불과 함께 판결의 결론을 광고로 게재할 것을 명했다.

문제가 된 「주간신조」(동년 7월 10일호)의 기사는 「『후쿠오카 일가참살사건』, 뒤범벅이 된 『극비 수사정보』의 진위(眞僞)」라는 제목으로, 살해된 처의 친척 중의 한사람이 후쿠오카 일가와의 사이에 금전적인 트러블이 있고 수사당국으로부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이혼전력 등을 익명(匿名)으로 보도했다.

재판부는 "기사는 익명으로 작성됐으나 면식이나 경력 등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특정할 수 있는 인물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기는 하지만 그 수는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기사 전체적으로는 공공성, 공익성이 인정되나 원고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에 국한해서 볼 때 그것을 취급한 목적이나 의의도 명확하지 않다"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신문협회보 2005년 9월 13일자) □

공문서 외의 첨부서류 열람 제한하는 새 법 시행 논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새 법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공문서에 첨부되는 문서에 대한 접근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기자들이 알권리 제한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새 법은 공문서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첨부된 서류에 대해서 열람을 원할 경우 기자는 판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Associated Newspapers, New International과 Trinity Mirror는 "언론이 법정의 절차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열린 사법의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소"라며 "새 법의 10번 조항인 언론의 자유에는 당연히 대중들이 정보를 접할 권리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균형이 맞추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들이 대법원 소송에 대한 정보와 그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소송의 본질에 대하여 알아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됐다"며"법원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사건과 그 일에 관련된 단체들을 확인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당한 관심이 쏠리는 분야다"라

며 이번 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새 법의 시행은 또 법원에서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기자들의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서 기자인 사라 림브릭은 "나는 17년 동안 대법원의 공문서를 담당해왔다. 이번 일로 나와 동료들의 직업은 매우 위협받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아무런 협의 없이 문서를 열람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은 열린 사법의 의무가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런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법부의 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Civil Procedure Rule Committee에서 시작된 것이고 단지 현행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애초부터 법은 항상 공문서만을 공개한다고 정해져있었다"며 "공문서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그에 딸린 모든 문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5년 10월 7일자) □

범죄 관련 증거, 언론 공개 확대

검찰청(이하 CPS)은 범죄 재판 과정에서 CCTV의 자료화면이나 사진 등의 증거물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공공 검찰국(이하 DPP) 켄 맥도널드 국장은 편집장위원회(The Society of Editors)와 함께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맥도널드 국장은 "많은 검사들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서 CPS와 언론사 대표들 그리고 경찰협회는 자료들을 언론에 숨기기보다는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약을 갖게 됐다. 검찰이 법정증거로 사용한 자료들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은 언론에 공개된다.

- 지도, 사진(피고를 연행하는 사진 포함), 도표나 법정에서 제작된 다른 모든 서류
- 사건 이후 경찰이 촬영한 사건 현장 비디오
- 압수된 증거품(무기, 배심원이 확인한 의류, 운반된 마약, 훔친 물건들)의 비디오
-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인터뷰나 발언의 발췌문들
- 범죄 상황을 재현하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나 사진
-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담은 CCTV 장면

한편 다음과 같은 자료는 CPS가 경찰 및 관련된 피해자, 증인, 피해자 가족들과 상의 후에 공개될 수 있다.

-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배심과 참관인들이 법정에서 증거물로 본 비디오나 사진 중 피해자와 용의자가 같이 있는 것이나 피해자 혼자만 있는 것
- 피고, 피해자, 증인이 경찰과 나눈 인터뷰가 담겨있는 비디오나 음성자료
-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서

맥도날드 국장은 세미나에서 "이제는 비밀을 감추는 사회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라며 "이 규약을 통해 검찰과 언론이 새롭게 발전된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5년 10월 21일자) □